

【별첨#2】

비상임이사 후보자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

1. 직무수행요건 및 자격요건

□ 직무수행요건

| 구 분 | 직 무 수 행 요 건 |
|------|---|
| 기본역량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사업 및 업무에 관한 법률적 타당성 검토 능력○ 사업 및 업무에 관한 기술적 합리성 검토 능력○ 재무 및 회계에 관한 회계적 적정성 검토 능력○ 사업 전반에 관한 사회적 합리성 자문 능력○ 청렴성, 준법성, 도덕성 등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공직윤리 의무를 준수하고 이에 솔선하는 능력 |
| 고유역량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광물자원산업, 광해방지 및 지역진흥사업에 대한 이해도○ 광물자원산업, 광해방지 및 지역진흥사업을 선도할 수 있는 능력○ 환경 분야(폐기물, 온실가스 등)에 관한 풍부한 학식과 경험○ 관련 산업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 |

□ 자격요건

가. 조직운영과 경영에 대한 **자문 및 견제능력**

나. 청렴성과 도덕성 등 **건전한 윤리의식**

다. 광물자원산업, 광해방지 및 지역진흥사업에 대한 **업무이해도**

2. 결격사유

2-1.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

※ 자세한 사항은 관계 법령 참조

제34조(결격사유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기업·준정부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
1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(결격사유)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2. 제22조제1항, 제31조제7항, 제35조제2항·제3항, 제36조제2항, 제48조제4항·제8항 및 제52조의3제3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②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.
 1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69조제1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
 2. 임명 당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밝혀진 경우
-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.

※ 국가공무원법 제33조(결격사유)

제33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2-2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

※ 자세한 사항은 관계 법령 참조

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2.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

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, 파면,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,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
1. 공공기관
 2. ~ 4. (생략)
- ③ ~ ④ (생략)